

무배당 새생활암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 단일로 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 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 나) 주피보험자의 만 22세이하의 미혼자녀

제3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 ① 이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날을 “보험계약일”로 보며, 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 ② 계약의 계약일 다음날 이후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될 때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 ③ 계약의 계약일 이후에 계적, 결혼 또는 만 23세에 달하여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경우 세토운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

②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④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1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암진단금여금, 암수술금여금, 암입원급여금 등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증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1.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주피보험자의 자녀로 출생하여 증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5항의 책임개시일과 출생한 날 중 늦은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3조(증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암에 대하여는 증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이외의 원인에 대하여는 증피보험자로 된 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⑦ 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가족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 안내장(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①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

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
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9조 【계약의 무효】

-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

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주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일 이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 만기급여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암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진단급여금을 지급(다만, 피보험자별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함)

4.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을 지급
5.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여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3일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암입원급여금을 지급
6.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또는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급여금을 지급
② 제4조(계약의 효력)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책임개시일의 전일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4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증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 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⑥ 제1항 제2호, 제6호 및 제4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암의 정의 및 진단학점】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청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4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4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학점은 해부병리 또는 원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at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알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3조 【배당금】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배당금(금리차보장금 포함)이 없습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리거나 그 잔액에 대한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또는 곱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 또는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정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

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 * 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들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7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 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0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22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보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10.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4조(계약의 효력), 제6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3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수술증명서 등)
 3. 암진단서 (암진단확정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또는 제3호의 암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4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자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만기환급형의 경우 회사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⑥ 만기급여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5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4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증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

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
니다.

제28조 【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굽여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에 계지급금에서 서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
합니다.
-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제29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회사
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증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3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조인 및 대리점

의 책임있는 자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4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 만원
— 가입연령 : 40 세
— 보험기간 : 20년 만기
— 납입기간 : 전기 날
— 납입방법 : 월 날
—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 동시 생존시 (가족계약의 경우)

1. 개인계약

가. 순수보장형

구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368	0	900	0
5년	6,840	2,912	4,500	1,079
10년	13,680	5,838	9,000	2,268
20년	27,360	0	18,000	0

나. 만기환급형

구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2,352	313	1,572	0
5년	11,760	8,523	7,860	4,826
10년	23,520	19,979	15,720	11,849
20년	47,040	47,040	31,440	31,440

2. 가족계약

가. 순수보장형

구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656	0	1,692	0
5년	8,280	3,613	8,460	3,537
10년	16,560	7,010	16,920	6,637
20년	33,120	0	33,840	0

나. 만기환급형

구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2,844	690	2,928	751
5년	14,220	10,425	14,640	10,630
10년	28,440	24,118	29,280	24,516
20년	56,880	56,880	58,560	58,56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개인계약

가. 순수보장형

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암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암진단급여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지급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③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지급금액	[3일초과 일원일수 1일당]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액

④ 암수술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금액	[1회 수술당]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⑤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나. 만기환급형

① 만기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만기예 살아 있을 때 (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②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암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③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암진단급여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지급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④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지급금액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액

⑤ 암수술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여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금액	[1회 수술당]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⑥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및 이미 납 입한 보험료의 전액

(2) 가족계약

가. 순수보장형

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암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배우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0% 해당액

②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암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별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종피보험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해당액- 자녀: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③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지급금액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액• 종피보험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0.6% 해당액- 자녀: 계약보험가입금액의 0.4% 해당액

④ 암수술급여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금액	[1회 수술당] ·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종피보험자 - 배우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2% 해당액 - 자녀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8% 해당액

⑤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또는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배우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2% 해당액

나. 만기환급형

① 만기급여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만기예 살아 있을 때(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②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암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배우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0% 해당액

③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암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별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종피보험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해당액- 자녀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④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지급금액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액 · 종피보험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0.6% 해당액 - 자녀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0.4% 해당액

⑤ 암수술급여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금액	[1회 수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종피보험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2% 해당액 - 자녀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8% 해당액

⑥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또는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 배우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2% 해당액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벤 탑승자	V50-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V89
10. 수상 운수 사고	V90-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13. 추락	W00-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16. 불의의 익수	W65-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분류항목	분류번호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Y35.5)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 장해
제 1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 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 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필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5 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자 2. 한필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 등급 분류 해설>

1. "항상 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 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2) 정신 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 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거동, 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 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 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테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 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말절끝(끝에서 첫째 부분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간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 손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잊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 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잊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부분째)의 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잊은 경우거나 중쪽지절 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 발가락은 지절
간 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 장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 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 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 등급 분류표 중 제 1급의 5, 6, 7, 8, 9, 제 2급의 3, 4, 5, 제 3급의 8 또
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 제10회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혈액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의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11회 이후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개인계약 제10조 제1항, 부부계약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재해입원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별)

- ① 본인형의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 및 가족형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부부형의 경우 제 2항 제 1호, 가족형의 경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 22세이하의 미혼자녀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 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제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 1의 지급조건중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 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제1형 내지 제5형의 경우에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제 6형 및 제7형의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 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 [연
금지급개시전, 제1보험기간, 만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
연금 최종지급일 등]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
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제 5조, 제 7조, 제11조 제 2항, 제12조 제 1항)에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 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조건	지 급 액	
		본인형	가족형
제 1 형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1/1000 해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피보험자 : 특약보 험 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배우자 : 특약보험 가 입금액의 0.6/1000 해 당액• 자녀 1인당 :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0.4/1000 해당액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벤 탑승자	V50-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V89
10. 수상 운수 사고	V90-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13. 추락	W00-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16. 불의의 익수	W65-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분류항목	분류번호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Y35.5)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1급	<p>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p> <p>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p> <p>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p> <p>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장해등급 분류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신체부위의 설명도

